




DAERYUN NEWSLETTER


 법무법인(유한)대륜


 180인의 전문변호사


 해결사례


 대륜의 기업의회인

법률정보


10분의 1 살상력 '저위험 권총', 경찰 1인 1총 지급한다
 - 흉악범에 대한 강력 대응 취지...법적 분쟁 위험 우려 목소리도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8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상속권 인정 받아... '구하라법' 조속한 통과 촉구

4개월 앞 다가온 중소기업 중대재해법...개정안 살펴보니
 - 여당, 2년 유예 법안 고려...야당은 유예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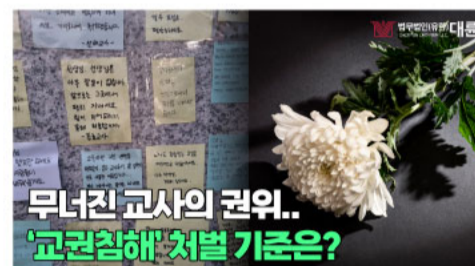

YouTube


 법무법인(유한)대륜
 @Daeryun_Lawfirm

유튜브 바로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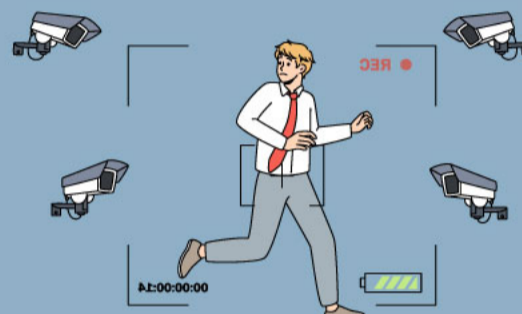
무작정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되는 이유!



선생님 권위 추락, 교권 침해 시 처벌수위는?

일상 속 법률 퀴즈 O X

음식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인정이 될까?


O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X

침입행위는 영업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영업주의 평온 상태를 방해하지 않았기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하단에서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결사례

심재국, 정찬우, 박동일 변호사 투자사기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
 피고의 투자사기 행각을 입증하여 투자금과 위자료 청구 주장

조우리, 이일권, 김근수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간접적인 책임과 작업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강정민, 심재국, 정찬우 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판결
 자의적 중지행위와 자수를 통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미디어 속 대륜

언론보도 더보기 →

리온신문	법무법인 대륜, 설립 5년 만에 국내 10위 로펌으로 발돋움... "한국의 베이커맥킨지로 만들 것" +
서울신문	여전한 전세사기...집주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 +
이주경제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허위고소 우려도 +

전국 사무소 안내

전국 32개 지점안내 →

- 부산 본부 사무소 이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 서울 본부 사무소 이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205-206호
- 창원 사무소 이전**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16 법조빌딩 6층
- 울산 사무소 이전**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로펌 중에서 최대 지점을 운영하고 있기에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서울본부·부산본부·창원·울산사무소를 법원과 더욱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전된 사무소에서 상담 진행이 이뤄지고 있으니 방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국 어디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본사	서울본부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본부	부산	부산서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법률 퀴즈 정답

X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주의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DAERYUN LAW FIRM LLC

대표번호 1800-790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